

-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홈페이지 개편 용역-

과업지시서

2025. 12.



특수
법인

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

K O R E A S L O P E S A F E T Y A S S O C I A T I O N

목 차

1. 용역 개요	1
2. 과업 상세 내용	1
3. 추진 보고	2
4. 과업의 변경	2
5. 저작권 관련 조치	3
6. 과업 수행 일반 지침	3
7. 용역 준공 후 제출 사항	4
8. 보고 계획	4
9. 과업의 일반 조건	4

별지 1. 일반현황 및 유사사업실적

1. 용역 개요

가. 용역명 :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홈페이지 개편 용역

나. 용역 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(하자보증이행은 준공 후 1년까지)

다. 과업 목적

-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홈페이지 전반적인 디자인 개선 및 사용자 중심의 UI/UX 재구성을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
- 웹진 뷰어 프로그램, 온라인 교육 시스템, 회원 관리 시스템 등의 기능 개선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 강화 및 관리자 효율성 강화

라. 과업 내용

-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사용자 중심의 UI/UX 재구성
- 웹진 뷰어 프로그램, 온라인 교육 시스템, 회원 관리 시스템 탑재

마. 예산액 : 금이천칠백만원정(₩27,000,000원, 부가세 포함)

2. 과업 상세 내용

가. 디자인(UI) 개선

- 협회의 정체성과 신뢰도를 반영한 메인·서브 디자인 제작
- 반응형 웹(PC·태블릿·모바일) 지원
- 직관적 UI/UX 구성 및 콘텐츠 접근성 향상
- 사용자 중심의 내비게이션 재설계

나. 기능(UX) 및 시스템 개발

- 통합 관리자 시스템(CMS) 구축
- 게시판, 자료실, 교육안내, 공지사항, 갤러리 등 핵심 기능 고도화
- 회원관리 기능 개선(회원가입, 권한관리, 이력관리 등)
- 웹 표준, 웹 접근성 준수 등 접근성 개선

다. 보안 및 안정성 강화

-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및 HTTPS 기반 보안 강화
- 서버 환경 점검 및 최적화
- 개인정보 처리 관련 보안 설정 강화(로그 기록, 접근 권한 관리 등)

3. 추진 보고

가. 착수계 제출

나. 수시 보고

과업 진행 및 세부 사항 검토를 위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야 함

다. 완료 보고

전체 기능 검수 및 테스트 완료 후 최종 보고하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홈페이지를 오픈함

라. 준공계 제출

4. 과업의 변경

가.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일부에 대한 과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.

나.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비용 청구없이 과업 지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5. 저작권 관련 조치

가.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된 모든 디자인, 개발 소스코드, 이미지, 프로그램, 문서 등의 저작권은 발주처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귀속된다.

※ 단, 웹진 뷰어 프로그램, 동영상 재생 플랫폼 등의 구독 프로그램은 제외한다.

나. 수행사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이미지, 폰트, 소프트웨어 등 전반에 걸쳐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납품 완료 후 활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수행사가 저작권을 재확보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수행사가 책임을 부담한다.

6. 과업 수행 일반 지침

가. 수행사는 기획구성안 등 주요 내용과 디자인 관련해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한다.

나. 수행사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사용 지침을 따른다.

다. 수행사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과업 내용 보완 및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,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.

라. 수행사는 과업 수행에 따른 저작권, 사용권, 초상권 또는 특허 등 제3자의 제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한다.

마.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협의 된 경비 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,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사전 승인을받아야 한다.

바. 과업 성과품에 대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사. 본 계약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이행 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.

7. 용역 준공 후 제출 사항

가. 결과 보고서(디자인, 기능설명 등 포함)

나. DB(관련 소스코드)

9. 과업의 일반조건

가. 용역내용 및 절차

- 「과업지시서」상의 홈페이지 개편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「과업지시서」는 “갑(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)” 이 작성하고, “을(계약대상자)” 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과업 수행 중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,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나. 업무 수행

- “갑” 과 “을” 은 본 계약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신의, 성실,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.

다. 용역비의 지급

-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%까지 신청 가능하며, 「과업지시서」상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확인함에 따라 준공금 30%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- 중도/잔금의 지급 요청 시에는 「과업지시서」 상의 일정 및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“갑” 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이 체결한 표준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

사업비용은 “갑” 이 부담한다.

- “을” 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“을” 은 기 지급된 사업비를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.
- “을” 은 정당한 이유 없이 준공 일정을 어길 시, “을” 은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90조에 따라 ‘지체상금’ 을 내어야 한다.

라. 용역의 진행 및 결과보고

- “을” 은 “갑” 또는 “갑” 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수행현장 확인, 관계서류의 열람, 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사업 책임자가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, 이에 불응할 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.
- “을” 은 용역기간 종료일 이전에 최종 성과물(증빙자료 포함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마. 검수

- “을” 이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의 결과를 “갑” 에게 인도할 때, “갑” 은「과업지시서」상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, 검수확인서를 “갑” 이 “을” 에게 전달함으로써 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.
- “갑” 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“을” 은 보완하여 “갑” 에게 보완사항에 대하여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.

바. 계약의 변경

-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드시 서면(이메일 또는 회의록 포함)으로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
- 납품 관련 변경 및 추가되는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계약 변경 가능

사. 계약의 해지

-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
- “갑” 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“을” 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수행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
- “을” 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- “을” 이 과업 일정을 준수하지 못 하였을 때
-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와 협의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“을” 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“갑”이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
 - “갑”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-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사업수행 점검결과 사업 중단으로 판정되면 본 계약은 해지된다.
-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, “갑” 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, 모든 책임은 “을” 에게 있으며 기존 지급된 선금은 반환하여야 한다.

아. 비밀누설금지의 의무

- “을” 은 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“갑” 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“갑” 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 “갑” 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“을” 은 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자. 산출물에 대한 권리

- 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 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“을” 이 대금 전부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“갑” 에게 귀속된다.
- “을” 은 “갑” 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수행 또는 그 결과의 활용으로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.

차. 하자보증의 이행

○ 본 계약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 이행 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.

별 지

<별지 1>

일반현황 및 유사사업실적

1. 기관명		2. 대표자			
3. 사업분야					
4. 주소					
5. 전화번호					
6. 회사 설립년도	년 월				
7. 해당부문 종사기간	년 월 ~ 년 월				
8. 유사사업실적					
연번	사업명	사업기간	계약금액	발주처	관련사업여부